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선거시행세칙

2023.10.0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정·부 학생회장 선거(이하 '예술대학 선거'라 한다)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① 본 세칙은 예술대학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공 학생회장 선거는 전공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시행세칙이 없을 시 본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3조 (원칙)

- ① 예술대학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예술대학 선거는 이전 예술대학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회원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③ 예술대학 선거는 회원들이 예술대학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 ④ 예술대학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 ⑤ 본회의 산하 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 규정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산하 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 관련 자치 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해당 세칙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구성원의 책임)

모든 회원은 예술대학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 (선거권)

- ① 본회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②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은 선거권자로 인정한다.
- ③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④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피선거권)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① 정·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 ② 회원으로서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 ③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전공별 5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 ④ 추천 시작 사흘 전을 기준으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예술대학 집행위원회, 전공 집행위원회(집행부, 집행국) 구성원 및 대표자가 아닌 자.

제7조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룰미팅 30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재학증명서
- ② 추천서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학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추천 서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이 있는 경우, 명단과 재학(재적)증명서
- ④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⑤ 후보 사진 (포스터용 1장)

제8조 (입후보자 심사)

- ①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제6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입후보자가 제7조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제9조 (사퇴 규정)

- ① 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 ③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관위 위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면 선관위가 논의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 각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단선일 경우 선관위는 의결을 통해 룰미팅을 선관위와 후보자와의 면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② 선거 시행 세칙 검토
- ③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장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 (위치)

예술대학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따라 집행, 조정할 권한을 예술대학운영위원회(이하 예운위)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2조 (목적)

예술대학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① 예술대학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② 예술대학 선거를 회원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 ③ 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과 합의를 방식 및 세칙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④ 선관위는 선거 후 제10장의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제14조 (구성)

- ① 선관위는 당해 예운위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예술대학 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한다. 집행위원회 중 2인 임명 시 예운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당해 예술대학 학생회장으로, 부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선거위원장)은 예술대학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선거위원장은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을 시 선관위원장과 부선거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의결권을 하나만 가진다.

제15조 (위원의 해임)

- ①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선거에 입후보할 때
 3. 본회 회원이 아닐 때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2/3 이상의 동의 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 ⑥ 부결 시 선거관리위원으로의 신분은 유지된다.

제16조 (소집, 개최 및 의결)

- ①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익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선관위원장 및 부선관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최한다.
- ③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전공 선거관리위원회)

- ① 각 전공 집행위원회(집행부, 집행국)가 전공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책임진다.
- ② 전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선거 유관기관

제1절 선거운동본부

제18조 (역할)

- ① 선본은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 ②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선거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 ③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 ④ 선본은 모든 학우에게 차별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구성 및 자격)

- ①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 ② 정·부후보는 당해 예술대학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 ③ 선본 구성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재적생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예술대학 집행위원회, 전공 집행위원회(집행부, 집행국) 구성원 및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20조 (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본장은 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 ②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 ②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2조 (선본 구성원 신고)

- ①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전공,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최초 선본 구성원 등록은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 선본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 구성원인 사람을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 구성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제23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 ② 선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 (선본이 선본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할 경우, 선관위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 2.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 3.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 4.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제2절 참관인

제25조 (통칙)

- ①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각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 (자격)

- ①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
- ②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각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재적)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 교체는 다음 날 적용된다.
- ③ 제26조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7조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조 (규제내용)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 ②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관위원장 및 부선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는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 ③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3.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29조 (기타 사항)

- ① 참관인들은 투표 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 ②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이때 대표 참관인은 선본장이다.)

제5장 선거

제30조 (선거일)

- ①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③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④ 3항의 일정은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마감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추천 기간 중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2.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제32조 (부정 선거운동)

- ① 다음 각호의 행위는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 살포
 3. 선거의 자유 방해
 4. 선전 방해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5.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6. 선관위 업무 방해
 7. 허위 사실 유포
 8. 후보자 비방
 9.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0.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룸미팅에서 합의된 장소 이외의 모든 곳에 해당한다.)
 11.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심 행위는 선관위의 판단 하에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선관위로 제보가 있거나, 공론화가 된 경우 조사한다.)
 12.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13.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 ② 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을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7장에 따른다.

제3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선관위원장, 부선관위원장, 학생회 집행위원회(집행부, 집행국)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 자
- ② 위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제34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35조 (선거유세)

유세는 개별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관련 제반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제36조 (개별유세)

- ①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 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룰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 ③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6장 이의제기

제37조 (이의제기)

-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 ② 선본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본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8조 (이의제기의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제7장 징계

제39조 (정의)

징계는 본 세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제42조, 43조에 의한다.

제41조 (징계의 통보)

- ①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②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③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다. (선거선전물량에 포함)
- ④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1.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공개 사과문을 포함해 대자보에 공개
 - 2.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 3.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

제42조 (임의적 징계)

- ① 임의적 징계란, 본 세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 ②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3조 (필요적 징계)

- ① 필요적 징계란, 본 세칙 각 조항에 “징계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② 필요적 징계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본 세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 결과에 따라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한다.

제44조 (재심의)

- ① 대표 참관인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때만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8장 투표

제45조 (투표일과 투표 시간)

- ① 투표는 이틀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다.
- ③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투표의 시작을 정시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관위의 논의 및 의결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야간에 수업이 있는 특정 전공은 선관위의 의결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투표소)

- ① 투표소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전공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제47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신분이 하나 이상 확인되어야 투표할 수 있다.

- ①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으로 제한한다.)
- ② 중앙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교학지원팀이나 학과 사무실에서 학번 대조가 가능한 자)

제48조 (투표 절차)

- ① 투표 절차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 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단, 온라인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 얼굴 확인은 제외한다.
 2. 인증번호 배부
 3. 전자투표 실시
- ② 종이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 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용지 배부
 4. 투표
- ③ 투표 절차를 진행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은 반드시 선거인의 신분 확인(얼굴과 이름, 학번)을 실시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 얼굴 확인은 제외한다.
- ④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모든 회원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49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 ① 투표소에는 선관위,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 ②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투표소에서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단, 해당 행위자가 선본원일 경우 해당 선본을 징계한다.

제50조 (기권 투표)

- ① 기권 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 ②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칸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제9장 개표

제51조 (개표 시간)

개표 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제52조 (개표장)

- ①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②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후보자와 각 선본 구성원은 개표 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53조 (개표 절차)

- ①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투표인 수 공고
 - 2.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선관위원장, 전자투표 시행 업체가 가지고 있다.)
 - 3. 개표
 - 4.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 ② 종이투표 개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투표인 수 공고
 - 2. 투표함 개봉
 - 3. 개표
 -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6. 현황판에 기재
- ③ 개표 절차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제54조 (무효투표)

- ①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처리한다.
- ② 표 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SNS와 예술대학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다.
- ③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2.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경우
 - 3.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종이투표의 경우 제54조 3항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 ⑤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경우 무효표 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사진 등을 공개한다.
- ⑥ 세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55조 (연장투표)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로 1일에 한하여 10시부터 19시까지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 (재선거)

- ① 재선거는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② 제55조에 해당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제57조 (재투표)

- ① 재투표는 시기와 시일을 연장하여 적당한 시기에 투표 행위만을 일컫는 말이다.
- ② 개표 후 선본에서 이의제기하여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이의가 수용된 경우 실시한다.
- ③ 재투표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단, 선거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0장 당선

제58조 (당선의 기준)

- ①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가 기권표보다 커야 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 ② 종이투표의 경우에도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가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 ③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 해야 한다.

제59조 (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선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당선공고를 한다.
- ②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④ 제58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선자가 없으면, 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의 의결로 재선거 및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 ⑤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당선 확정 공고를 한다.

부 칙

제1조 (선거 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2조 (선거시행세칙의 효력 발생)

본 세칙은 개정 이후 예술대학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상위 단위의 세칙 및 관례, 선관위의 협의에 따른다.